

『구미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현행 조례에 다문화가족을 추가하여 일부 조항 용어의 정의와 지원범위를 조정, 내용·체계를 재정비하고,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“외국인주민지원 시책위원회”를 “구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”로 변경하며,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여,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조례 제명 변경 : 「구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」로 변경
- 『다문화가족』 용어 반영(안 제2조제3호)
- 다문화가족 지원 범위 추가(안 제6조제2항)
- “구미시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”를 “구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”로 변경(안 제7조~안 제12조)
 - 「구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」로 명칭 변경
 - 협의회 기능 수정
 - 위원의 해촉 추가
-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범위 명확화(안 제15조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,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
- 「국적법」,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
- 「경상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」

○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○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됨

○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붙임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구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적응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범위를 추가하고 명확화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명 변경 및 관련용어·조문정비
- 다문화가족 지원 범위 추가
- 「구미시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」를 「구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」로 변경
-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범위 명확화

○ 검토결과

본 조례안은

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「구미시외국인주민 지원시책위원회」를 「구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」로 명칭을 변경 하고, 현행 조례에 다문화가족 용어 반영 및 지원범위를 추가하고 협의회 기능을 재정비하는 등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